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장 계급정년 폐지 등〉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장 계급정년 폐지(안 제8조)	3
2.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보직이 없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6
3.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를 예외 없는 2년 단임으로 규정(안 제24조의2)	9
※참고자료: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8.
3. 회부연월일 : 2026.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중장 계급정년 폐지(안 제8조)

☐ 개정안은 현행 4년으로 규정된 중장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현역정년)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계급정년</u>	3. <u>계급정년</u>
<u>중장: 4년</u>	<u>소장: 6년</u>
<u>소장: 6년</u>	<u>준장: 6년</u>
<u>준장: 6년</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군인사법」 제정 당시 중장의 계급정년은 6년이었으나¹⁾, 군 인력 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1980년 개정을 통해 이를 4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²⁾.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중장의 경우 ① 연령정년 61세, ② 4년의

1) 법률 제1006호, '62.1.20.

2) 법률 제3265호, '80.12.4.

계급정년이 도과하는 경우 ③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3)하면 전역하게 되는 구조임.

개정안은 중장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해 숙련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급정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의 활용기간을 확대하고 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중장 직위는 군 전체적으로 약 30여 개 수준의 제한된 직위로 운영되고 있는 바, 계급정년이 폐지될 경우 중장 직위의 공석 발생이 지연되어 후속 진급 및 인사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장성급 인사체계는 상위 계급의 결원 발생 여부가 하위

3)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중장: 61세

3. 계급정년

중장: 4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단서 생략)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계급의 진급 및 보직운영과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중장 계급정년 폐지는 중장 계급 자체의 문제를 넘어 장성급 인사운영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둘째, 계급정년 폐지로 연령정년까지 복무가 가능하게 될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대장과 중장 간 기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지휘체계 운영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장 계급의 평균 근속기간은 대장 진급자 1.4년, 중장 전역자 2.1년으로 계급정년인 4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상당수 인원이 계급정년 이전에 진급 또는 전역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개정안에 따른 실제 중장 인력 활용기간 연장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중장 계급정년 폐지에 대해 인력순환 제한 및 실제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인력 활용기간 연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보직이 없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 개정안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가 무보직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생략)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 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 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 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 다. ③ . ④ (생략)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장 이상의 장성급-----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 종료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는 경우 현역에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

4)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현행 장성급 장교의 전역 관련 규정은 2010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당시 장성급 인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원 외 직위 운영 및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개정 이전에는 소장 및 준장 계급에 대하여 정원 외 직위가 다수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장 및 준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대령 이하 계급의 원활한 진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바,

당시 개정에서는 장성급 장교의 정원 및 직위를 법령상 명확히 규율하고, 정원 외로 운영되던 소장·준장 직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보직이 없는 소장 및 준장은 전역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2010년 개정 내용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가 무보직 상태라는 사유만으로 현역 신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장성급 장교는 위관급·영관급 장교와 달리 제한된 직위와 정원을 전제로 운영되는 인사체계인바, 소장·준장에 대하여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않도록 할 경우 정원 외 인력이 누적되어 후속 진급 및 보직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2010년 법 개정 이전에 나타났던 인사적체 문제가 재발

하거나 국방혁신 4.0에서 명시한 장군 정원(370명)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임.

- 국방부는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가 보직이 없는 경우에도 현역에서 전역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 해당 제도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적절한 인사조치가 어려워질 경우 부대 지휘관리 및 안정적 부대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를 예외 없는 2년 단임으로 규정(안 제 24조의2)

□ 개정안은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2년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u>전역되거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u>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u>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u>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법률 제2131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전역된다.</u>----- ----- ----- -----. ③ -----<u>진급</u>----- ----- ----- -----.

□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제 진급자는 임기 종료 후 원칙적으로 전역하나, 기존 직위에 재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임기제 진급제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일정 기간 활용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외적 인사제도임⁶⁾.

개정안은 임기제 진급 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전직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예외 없는 2년 단임 체계로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임기제 대상 직위는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⁷⁾,

5)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전역되나,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6) 법률 제5060호, '95.12.29. 개정

7)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참고자료 참조)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② 장성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성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

진급, 재보직 및 전직 또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고 규정⁸⁾되어 있는 바, 현행 제도가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임기제 진급 총 595건 중 전직 및 재보직 사례는 25건으로 그 비율은 약 4.2%를 차지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현행 제도가 예외적 운용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군 조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유연한 인력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보직 및 전직 예외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시한다

8)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 ③ 제1항에 따른 진급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재보직(再補職)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한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9) [최근 10년간 임기제 진급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95	43	56	52	66	61	67	67	60	63	60
소령→중령	196	11	15	22	25	24	23	22	18	17	19
중령→대령	168	10	12	6	18	19	21	21	16	24	21
대령→준장	157	16	19	18	15	12	15	16	21	14	11
준장→소장	63	6	9	5	7	4	7	4	4	8	9
소장→중장	11	0	1	1	1	2	1	4	1	0	0

[최근 10년간 임기제 진급자의 전직 및 재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25	4	0	5	3	3	0	3	3	2	2
대령	3	0	0	0	1	0	0	1	0	1	0
준장	13	2	0	3	2	2	0	1	1	1	1
소장	9	2	0	2	0	1	0	1	2	0	1

자료: 국방부

으로 보임.

□ 국방부는 임기제 진급자의 전직 및 재보직 규정은 진급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제도로도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도모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동일한 취지의 규율이 적용되는 법 제21조제3항의 병과장 관련 규정¹⁰⁾에 대해서도 법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10) 「군인사법」 제21조 (병과장 임명)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참고자료: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제25조의2제1항 관련)
1. 국군방첩사령관
2.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3.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4. 국군방첩사령부 2처장
5. 국군방첩사령부 제810부대장
6. 국군방첩사령부 제830부대장
7. 국방시설본부장
8. 국군의무사령관
9.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지휘통신부장
10.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11. 해군본부 감찰실장
12.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13.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